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방정부 또는 당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지방정부 또는 당국이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2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 실행관세를 감축할 경우, 그 관세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관세가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6.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설정된 퀴터 내 수입을 할당하는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관세율할당의 부과에 의해 야기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4 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

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출국 이전,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8. 어떠한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7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2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 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1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4.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규제당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2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한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 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 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 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 2.11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부속서 2.1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 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 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12 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규율된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13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 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와 합치하게 부속서 2-나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원산지 농산 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더 높은 수입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제7장(무역구제)상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4.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5.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6.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4 조 농업 수출 보조금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재도입하지 아니한다.¹

제 2.15 조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콜롬비아는 부속서 2-다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안데스 공동시장 결정 제371호 및 그 개정에 따라 1994년 수립된 안데스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절 제도 규정

¹ 양 당사국은 보조금을 받은 어떠한 농산물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수출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제 2.16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그리고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4. 양 당사국은 농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 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절 정의

제 2.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
-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1. 콜롬비아의 경우,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1991년 1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9호에 따른 커피 수출 통제
 - 나. 2013년 8월 1일까지 2002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 제788호 및 1995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률 제223호에 따른 알코올 음료 과세
 - 다. 재제조품²을 제외하고, 2006년 10월에 제정된 법령 제3803호의 제3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수입 통제, 그리고
 - 라. 2006년 10월에 제정된 법령 제3803호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와 제조일 후 2년을 초과한 뒤 수입된 신차를 포함한 차량에 대한 수입 통제
2. 제1항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조치들을 유지할 필요성은 이 협정 발효 10년 후 재검토된다.

²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재제조품의 교역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제 2.16 조에 의해 설치되는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부속서 2.2에 포함된 재제조품의 정의에 대하여 공동결정을 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 2.11
수출세

1. 콜롬비아의 경우, 제2.11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1993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101호에 따라 커피의 수출에 요구되는 분담금, 그리고
 - 나. 1998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488호에 따라 에메랄드의 수출에 요구되는 분담금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콜롬비아가 비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국의 수출 분담금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경우, 콜롬비아는 한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9”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퍼센트 포인트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가장 근접한 원 단위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2.4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감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 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가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12-A, 13, 16-A, 16-S 그리고 X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12-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2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16-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6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16-S”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 2)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16단계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콜롬비아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콜롬비아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은 제0402101010호, 제0402101090호, 제0402109000호, 제0402211000호, 그리고 제0402219000호에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연간 총 물량 100 미터톤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분기별 공매를 통하여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일반 주해
콜롬비아 관세양허표

1. 콜롬비아 공화국의 관세표("AACOL³")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AACOL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AACOL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AACOL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AACOL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가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9, 18, 18-A 및 20을 포함한다.
 - 가. 단계별 양허유형 “9”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단계별 양허유형 “18-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5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8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5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6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라.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콜롬비아는 2012년 8월 13일 기준 최혜국 관세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그러한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⁴

³ 이 협정의 목적상, AACOL은 영어로 콜롬비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C")를 말한다.

⁴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2012년 8월 13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다를 경우, 콜롬비아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양 당사국은 제 22.4 조(발효)에 따라 결정되는 이 협정 발효일에 이 협정의 관세철폐 계획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 가. 콜롬비아 양허표상 “a”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 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페센트 포인트 낮다.
- 나. 콜롬비아 양허표상 “b”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 차 및 이행 2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페센트 포인트 낮다.
- 다. 콜롬비아 양허표상 “c”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 차, 이행 2년차 그리고 이행 3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페센트 포인트 낮다. 그리고
- 라. 콜롬비아 양허표상 “d”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 차,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그리고 이행 4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페센트 포인트 낮다.

부록 2-가-1 콜롬비아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콜롬비아가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콜롬비아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C")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은 HTSC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 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TSC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한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콜롬비아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TSC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콜롬비아는 제04021010호, 제04021090호, 제04022111호, 제04022119호, 제04022191호 그리고 제04022199호에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연간 총 물량 100 미터톤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한다. 농업지역개발부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대상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0201.30.0000,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 (미터톤)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10,930	11,149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40.0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12,555	12,806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30.0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발동수준 (미터톤)	13,062	13,324	13,591	13,862	14,140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24.0	24.0	24.0	24.0	24.0	0

나. 아래에 포함된 만다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0805.2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	7,223	7,367	7,514	7,665	7,818	7,974	8,134

(미터톤)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8,297	8,462	8,632	8,804	8,980	9,160	9,343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미터톤)	9,530	9,721	9,915	10,113	10,316	10,522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86.4	86.4	86.4	86.4	86.4	86.4	0

콜롬비아 양허표

대상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TSC 0201.30.00, 0202.30.0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 (미터톤)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10,930	11,149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80	80	80	80	80	80	60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12,555	12,806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60	60	60	60	60	48	48
-------------------------	----	----	----	----	----	----	----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발동수준 (미터톤)	13,062	13,324	13,591	13,862	14,140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48	48	48	48	48	0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⁵

HTSC2007	품목명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312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2031900	— — 기타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71100	—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101200	—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2101900	— — 기타
04011000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
04012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초과 6퍼센트 이하인 것
04051000	— 버터
10059011	— — — 노란색의 것
10059012	— — — 흰색의 것
10059030	— — 흰 옥수수(쟈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자이겐트)
10059040	— — 보라 옥수수(쟈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모라도)
10059090	— — 기타
10070090	— 기타
11022000	— 옥수수 가루
11081200	— — 옥수수 전분
11081900	— — 기타 전분
12010090	— 기타
12021090	— — 기타
1202200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51090	— — 기타
12059090	— — 기타
12060090	— 기타
12074090	— — 기타
12079991	— — — 캐리트 종자
12079999	— — — 기타
12081000	— 대두의 것
12089000	— 기타
15010010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15010030	— 가금지
15020011	— — 변성된 것
15020019	— — 기타

⁵ 이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세율인 안데스 가격밴드("APB") 제도의 고정요소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철폐된다. APB 제도의 변동요소는 유지된다.

HTSC2007	품목명
15020090	- 기타
1503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텔로우유(유화 또는 혼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060010	- 우족유
15060090	- 기타
15071000	-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079010	- - 첨가된 변성 물질의 함유량이 1퍼센트 이하인 것
15079090	- - 기타
15081000	- 조유
15089000	- 기타
15111000	- 조유
15119000	- 기타
15121110	- - - 해바라기의 것
15121120	- - - 잇꽃의 것
15121910	- - - 해바라기의 것
15121920	- - - 잇꽃의 것
15122100	- - 조유(고시톨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122900	- - 기타
15131100	- - 조유
15131900	- - 기타
15132110	- - - 팜핵의 것
15132910	- - - 팜핵의 것
15141100	- - 조유
15141900	- - 기타
15149100	- - 조유
15149900	- - 기타
15152100	- - 조유
15152900	- - 기타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59000	- 기타
1516200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71000	-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15179000	- 기타
15180010	- 리녹신
15180090	- 기타
16010000	소시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의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6023210	- - - 조미한 냉동 조각
16023910	- - - 조미한 냉동 조각

HTSC2007	품목명
16024100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6024200	－－어깨살과 그 절단육
170191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23020	－－포도당 시럽
17023090	－－기타
23012011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3012019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 이하인 것
23021000	－옥수수의 것
23024000	－－기타 곡물의 것
230400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3061000	－면실의 것
23063000	－해바라기 씨의 것
23069000	－기타
23080090	－기타
23091090	－－기타
3505100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35052000	－글루
38231100	－－스테아린산
38231200	－－올레인산
38231900	－－기타